

제3090호
2024. 5. 3.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9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민원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디지털 민원환경을 이용해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근거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비서류 중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보 및 담당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첨부) 추가
나.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 요구에 의한 정보 전산조회 활용 근거 및 동의서 삽입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 02-3396-4762, 팩스 : 02-3396-8650, email : chludddk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497호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4-4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

● 公 告

제2024-493호 :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1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llegible]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신청서

1.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철거위치 :

3. 철거일시 :

4. 보 상 액 : 원

의
의
의

신청인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건물명				
	⑤ 주소								
⑥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함 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의 소 유자(관리자)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 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금연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			
⑨ 시설 정보	⑩ 시설명			
	⑪ 시설장(대표)			
	⑫ 소재지			
	⑬ 원아수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 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⑥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m ²))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상기 지역 생활주민(인접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견 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신청서 보상금 신청서 1.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철거위치 : 3. 철거일시 : 4. 보 상 액 : 원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구청장 귀하 첨부 :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신청서 보상금 신청서 1.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철거위치 : 3. 철거일시 : 4. 보 상 액 : 원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구청장 귀하 <table><tr><td rowspan="2">구비서류</td><td>신청인 제출서류</td><td>인감증명 1통</td></tr><tr><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d>주민등록등본 1통</td></tr></tabl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통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통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①성명</td><td colspan="2">②생년월일</td></tr><tr><td>③전화번호</td><td colspan="2">④건 물 명</td></tr><tr><td colspan="2">⑤주소</td><td colspan="2"></td></tr><tr><td rowspan="3">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td><td>⑦ 명칭(지역명)</td><td colspan="2"></td></tr><tr><td>⑧ 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td></tr><tr><td rowspan="2">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td><td>공개공지</td><td>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td><td>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td></tr><tr><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r><tr><td rowspan="2">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td><td>공개공지</td><td>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td><td>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td></tr><tr><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r></table>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의 소유자(관리자)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건 물 명		⑤주소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①성명</td><td colspan="2">②생년월일</td></tr><tr><td>③전화번호</td><td colspan="2">④건 물 명</td></tr><tr><td colspan="2">⑤주소</td><td colspan="2"></td></tr><tr><td rowspan="3">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td><td>⑦ 명칭(지역명)</td><td colspan="2"></td></tr><tr><td>⑧ 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td></tr><tr><td rowspan="2">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td><td>공개공지</td><td>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td><td>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td></tr><tr><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r><tr><td rowspan="2">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td><td>공개공지</td><td>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td><td>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td></tr><tr><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d>찬성</td><td>반대</td></tr></table>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의 소유자(관리자)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건 물 명		⑤주소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건 물 명																																																																																	
⑤주소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건 물 명																																																																																	
⑤주소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⑩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① 성명</td><td colspan="2">②생년월일</td></tr><tr><td>③ 주소</td><td colspan="2">④ 전 화 번호</td></tr><tr><td rowspan="3">⑤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td><td>⑥ 명칭(지역명)</td><td colspan="2"></td></tr><tr><td>⑦ 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⑧ 범 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td></tr><tr><td rowspan="4">⑨ 시설 정보</td><td>⑩ 시 설 명</td><td colspan="2"></td></tr><tr><td>⑪ 시설장(대표)</td><td colspan="2"></td></tr><tr><td>⑫ 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⑬ 원아수</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td><td colspan="3">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td></tr><tr><td>찬성</td><td colspan="2">반대</td></tr></table>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2.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 화 번호		⑤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범 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⑨ 시설 정보	⑩ 시 설 명			⑪ 시설장(대표)			⑫ 소재지			⑬ 원아수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별지 제2호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①성명</td><td colspan="2">②생년월일</td></tr><tr><td>③주소</td><td colspan="2">④전화번호</td></tr><tr><td rowspan="3">⑤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td><td>⑥명칭(지역명)</td><td colspan="2"></td></tr><tr><td>⑦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⑧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td></tr><tr><td rowspan="4">⑨시설 정보</td><td>⑩시설명</td><td colspan="2"></td></tr><tr><td>⑪시설장(대표)</td><td colspan="2"></td></tr><tr><td>⑫소재지</td><td colspan="2"></td></tr><tr><td>⑬원아수</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⑩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td><td colspan="3">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td></tr><tr><td>찬성</td><td colspan="2">반대</td></tr></table>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⑥명칭(지역명)			⑦소재지			⑧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⑨시설 정보	⑩시설명			⑪시설장(대표)			⑫소재지			⑬원아수			⑩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 화 번호																																																																									
⑤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범 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⑨ 시설 정보	⑩ 시 설 명																																																																										
	⑪ 시설장(대표)																																																																										
	⑫ 소재지																																																																										
	⑬ 원아수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⑥명칭(지역명)																																																																										
	⑦소재지																																																																										
	⑧범위(연장길이(m) 또는 면적(㎡))																																																																										
⑨시설 정보	⑩시설명																																																																										
	⑪시설장(대표)																																																																										
	⑫소재지																																																																										
	⑬원아수																																																																										
⑩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 자)	①성명 ③주소	신청인 (대표 자)	①성명 ③주소
②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②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명칭(지역명) ⑧소재지 ⑨범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m))	⑥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명칭(지역명) ⑧소재지 ⑨범위 (연장길이(m) 또는 면적(m))
⑩금연구역 지정 등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 수 기재	상기 지역 생활주민(인접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견 수 찬성 반대	⑩금연구역 지정 등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 수 기재	상기 지역 생활주민(인접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견 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2.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9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에서 ‘성인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
 -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추가
- 나.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 제6조의2~제6조의4)
-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안 제2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정의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안 제6조의2)
 - 이용권 발급대상은 중구민으로 신청주의 원칙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 필요한 사항 마련을 위한 근거 명시
 -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안 제6조의3)
 - 이용방법, 이용권 회수 및 환수 규정 등
 -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안 제6조의4)
 - 이용권 발급대상 관리 수행 규정
- 다. 재원확보 및 지원사항에 ‘주민 자발적 학습모임’ 추가 (안 제6조)
- 주민의 지속적 심화학습 지원과 지역사회 학습실천 및 문제해결에 참여 촉진을 위한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92, 팩스 : 02-3396-8634, email : mjkang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을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평생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 중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 앞에 “제3장 평생학습관”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평생학습관

제20조 앞에 “제4장 평생학습센터”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평생학습센터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6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 ③ (생략)	제6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
<신설>	제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 중 구청장

	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삭 제>
<신 설>	제4장 평생학습관
제4장 평생학습센터	<삭 제>
<신 설>	제5장 평생학습센터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93호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5.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시설 현황

- 시설명칭 : 중구 여성플라자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 (신당동 292-60외 1)
- 규 모 : 지상3층 ~ 지상6층(대지 608㎡, 건물면적 2,178㎡ 중 1,014㎡)
- 위탁시설 : **여성플라자 지상3층 ~ 지상6층**
(※ 지하1층 ~ 지상2층과 지상3층의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
- 2024년 사업예산 : 424,558천원

2. 위탁내용 :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2024. 8. 1. ~ 2027. 7. 31)

4. 위탁조건

- 시설운영 중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절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중구여성플라자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관장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관장 자격기준

▶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5. 신청자격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여성의 복지,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할 것

6. 신청 제외 대상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자)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소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5. 2. (목) ~ 2024. 5. 17. (금)
- 접수기간 : 2024. 5. 14. (화) ~ 2024. 5. 17. (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본관 5층)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화~금, 09:00~18:00)
(※토요일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8. 제출서류 : 원본 포함 13부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공통 사항	■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신청서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대표자의 경력사항 ■ 법인·단체 등의 여성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향후 3년간 중구여성플라자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발표용자료 (PPT 등)		

- 신청서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3부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서 (13부, 3~5페이지 분량)
 ※ 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9. 수탁법인(단체) 선정 및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중구여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 신청법인(단체)은 심사당일(별도통보)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해당 법인·단체의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원이 출석하여 7분 내의 운영계획 발표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가족정책과 (☎3396-5403)로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여성플라자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설립목적			
자산내역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타(특이사항)					

※ 기타 란에는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여성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운영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법인·단체 등의 여성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6. 향후 3년간 중구여성플라자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위탁운영체 각서

본 법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를 위탁운영 신청함에 있어서 금회 제출한 모든 서류 및 내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후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류 및 내용, 제반사항 등이 허위일 경우에는 중구에서 위탁취소 등 어떤 제재를 하여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아니 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각서인 법인명(단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위탁운영체 현황

1. 위탁운영체명(법인 또는 단체) :
2. 소재지 :
3. 설립목적 :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4.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서 등
5. 대표자 인적사항 (작성예시)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주요경력(연도)	본적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는 원본에만 제출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6. 구성인원 : 명(인적조직원 첨부)

7. 설립일자 및 연혁

연혁	내용
설립일자	

8. 주요사업내용(실적증명 자료 첨부)
9. 2022년 법인 또는 단체 결산요약서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용

※ 2023년도 결산이 가능한 경우는 2023년도로 제출

10. 위탁신청 동기(취지)

11. 자산 및 수익사업 현황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총계	※ 합계금액 등 수치 정확히 작성	
부동산		
등산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부채		

-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등은 원본에만 따로 붙임)

※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기준시가

(1)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평가액(백만원)
계				

- (2) 건물 소유 현황

부동산소재지	구조 및 용도	건축연면적(㎡)	소유자	평가액(백만원)
계				

- 나. 등산 (잔액증명등 증빙서 첨부)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예금명	예금주	금액	비고
계			

- 다. 부채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금융		
개인		
기타		

13. 위탁운영주체의 공신력

가. 최근 3년간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연 도	점검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현재				

나. 운영주체 및 종사자의 기여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수상기관 (공모사업명)	수상년도 (공모년도)	수상종류	비 고

※ 구분 : 대표자, 시설장등으로 기재

※ 수상 종류 : 복지 및 여성관련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 - 관련자료 사본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14.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시설 운영 실적

연도	시설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운영기간	소유자
			직영	수탁		
2021년						
2022년						
2023년						

15. 법인(단체)의 2022~2023년도 사업실적

연도	실적내용	비 고
2022년		
2023년		

중구여성플라자 운영계획서

구분	주요내용
법인 또는 단체명	
시설운영 목적	
주요사업계획	○ 향후 3년간의 주요사업 계획 ※ 위탁 교육사업 이외에 여성 권익신장 및 문화행사 계획 등 포함
시설운영계획	○ 조직 ○ 예산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연간 여성플라자 지원계획 및 부족운영비 조달계획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시설 위탁운영 실적 등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바람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합 계	총점 100	세 부 항 목	배점기준	평가점수
1. 법인 목적의 적실성	10	- 법인 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10 8 6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10 8 6	
		-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10 8 6	
		- 계획된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연계성	10 8 6	
3. 법인의 경영능력	20	- 시설운영 능력	10 8 6	
		- 여성플라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	10 8 6	
4. 운영체의 여성관련사업 운영실적	20	- 여성관련 시설·프로그램 수탁운영 및 자체사업 실적 등	20 16 12	
5. 운영체의 재정능력	20	- 운영체의 재정규모	10 8 6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10 8 6	
합 계				

-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심사 기준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해 신청 운영체별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 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법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Ⅰ 법인·단체 목적의 적합성-10점

- ① 법인·단체 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 여성관련 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점)
 - 여성관련 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8점)
 - 여성관련 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점)

Ⅱ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①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②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③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연계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연계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연계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Ⅲ 법인·단체의 경영능력-20점

- ① 시설운영 능력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② 중구여성플라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

- 중구여성플라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가 우수한 경우 -----(10점)
- 중구여성플라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가 보통인 경우 -----(8점)
- 중구여성플라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가 미흡한 경우 -----(6점)

④ 여성관련 사업실적-20점

① 여성관련 시설·프로그램 수탁운영 및 자체사업 실적 등

- 법인·단체의 여성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20점)
- 법인·단체의 여성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16점)
- 법인·단체의 여성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12점)

⑤ 재정상태-20점

① 법인의 재정 규모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10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 5억 미만인 경우 -----(8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6점)

<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10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 ~ 2억미만인 경우 -----(8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6점)

※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중구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조정가능

② 법인·단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6점)